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이상<br>위반 |
| 가. 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2조 제1항제1호 | 60만원   | 100만원 | 200만원       |
| 나.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·흙·돌,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·제거 행위를 방제한 경우 | 법 제42조 제1항제2호 | 60만원   | 100만원 | 200만원       |